

경영공시 운영 규정

제정 2018. 11. 26.

개정 2019. 8. 1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금융위원회의 「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」(이하 “경영공시 기준”)에 따른 금융감독원(이하 “감독원”) 경영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경영공시 운영

제3조(공시기준) 감독원 경영공시의 공시항목과 기준 등은 「경영공시 기준」에 따른다.

제4조(공시방법) 「경영공시 기준」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항목을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.

제5조(공시책임자) ① 경영공시 항목별 작성자,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, 그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한다.

② 작성자는 각 공시항목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(팀)의 실무자로 공시항목별로 감독자가 지정한다. 다만, 복수 부서(팀)가 작성을 담당하는 공시항목의 경우 감독자는 작성자중 1인으로 하여금 공시자료 작성 총괄 및 공시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작성자는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홈페이지 공시, 공시자료의 적정성 점검을 담당한다.

<개정 2019.8.14>

③ 감독자는 「조직관리규정」에 따른 경영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 감독자는 공시업무 기획 및 담당자 지정, 공시자료의 적정성 점검을 담당한다. <개정 2019.8.14>

④ 확인자는 「조직관리규정」에 따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한다. 다만,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

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 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확인자는 작성자가 제출한 공시자료의 적정성 확인을 담당한다. <개정 2019.8.14>

제6조(공시원칙) ① 경영공시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,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.

② 「경영공시 기준」 제7조에 해당되는 자료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공시시기) ① 경영공시 자료는 「경영공시 기준」 “별표 1”의 갱신 주기에 따라 정기공시,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한다.

② 정기공시 항목은 갱신 주기에 따라 매년(4월말), 매 반기(4월말, 10월말), 매 분기(1월말, 4월말, 7월말, 10월말)에 일괄 공시한다.

③ 수시공시 항목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·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시한다.

제8조(공시절차) ① 경영공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.

1. 작성자는 경영공시 자료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감독자 및 확인자에게 아래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한다.

가. 정기공시: 갱신주기에 따른 공시일(1월말, 4월말, 7월말, 10월말)
10일 이전

나. 수시공시: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·변경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

2. 감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. <개정 2019.8.14>

3. 작성자는 확인자의 확인 후 공시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② 공시내용의 변경이나 오류 등으로 공시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
1. 공시내용 변경이나 오류 등으로 공시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작성자는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감독자 및 확인자에게 공시자료 수정 사유 및 수정 공시자료를 제출한다.

2. 감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 수정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수정 공시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. <개정 2019.8.14>

3. 작성자는 확인자 확인 후 수정 공시자료 및 수정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.

제9조(공시자료 점검) ① 작성자 및 감독자는 경영공시 자료의 정확성,

충실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「경영공시 기준」 제11조의 불성실공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공시자료를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<개정 2019.8.14>

② 작성자는 「홈페이지운영규정」 제13조에 따른 분기별 점검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홈페이지 관리부서는 그 점검 결과를 감독자 및 확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홈페이지 관리부서가 「홈페이지운영규정」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경우 경영공시 부문의 점검 결과를 감독자 및 확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시현황 보고) 감독자는 매 분기 정기공시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제11조(공시 작성자 관리) ① 조직개편, 인사이동 등으로 작성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는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감독자는 작성자를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「경영공시 기준」 개정에 따른 공시항목과 공시기준 변경으로 작성자 신규지정이 필요할 경우, 감독자는 공시항목별 담당부서 및 작성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부칙(2018. 11. 26.)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8. 14.)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